

날짜		이름	
----	--	----	--

YM고전읽기 논술 능력고사(초등5~6학년)

[문제1]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간섭’이란 쟁점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의 논지, (다)의 랠프의 주장을 서로 비교해보자. (500자 내외)

[문제2]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간섭’이란 쟁점을 중심으로 (라)의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과 (마)의 ‘노키즈존 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각각 논리적으로 서술해보자. (700자 내외)

(가)

정부의 간섭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듯하거나 잘못이 고쳐질 것 같으면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간섭을 받느니 웬만한 사회적 해악을 감수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이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다르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항에서 그들이 느끼는 이익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 개입하는 경우라도 정부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다. 규칙이나 원칙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원리를 제시한다.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 그러나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주려고 간섭하는 것도 허용해선 안 될까? 밀은 사회의 간섭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강요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되고 충고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간청하는 방법을 쓰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수많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동체이기에, 개인의 자유가 항상 절대적인 권리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

국가는 때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로써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운전 단속이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가는 '음주 후 운전을 할 자유'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권'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가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그 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행위가 곧바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가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보호가 필요한 특정 계층에게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으며, 유해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인에게는 허용되는 선택의 자유가 미성년자에게는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제한되는 셈이다.

(다)

앞부분 줄거리: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던 소년들은 무인도에 불시착한다. 개중 나이가 제일 많았던 소년 랠프를 대장으로 선출하고 여러 규칙을 만들어 구출될 때까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로 한다. 그러나 소년들은 점차 게으름을 피우거나 규칙을 어기고 개인 행동을 하게 된다.

랄프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회의를 여러 번 했어. 누구나 발언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모인 시간을 좋아했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결정했지. 그러나 그 결의사항을 지켜본 적이 없었어. 우리는 개울에서 물을 떠다 야자껍질에 담아서 신선한 잎사귀로 덮어두기로 결정했었어. 며칠 동안은 그렇게 했지. 그러나 지금은 껍질 속에 물이 들어 있지 않아. 야자껍

질은 말라버렸어. 우리는 개울에서 그 물을 그냥 마시고 있어.”

이 말에 동감한다는 수런거림이 있었다.

...(중략)...

“다음은 봉화에 관해서야.”

랄프는 약간 숨이 가쁜 듯이 가벼운 한숨을 토했다. 이에 응답하듯 청중도 한숨을 토했다. 잭은 칼로 나뭇조각을 쪼개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로버트에게 속삭였다.

“봉화는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야. 운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봉화를 계속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겠니? 불 피우기가 그렇게도 힘드니? ... 내가 말하려 했던 것은 이게 전부야.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너희들은 나를 대장으로 선출했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 바위 사이를 확장실로 쓸 것. 신호를 보낼 봉화의 연기를 계속 올릴 것. 불을 산에서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 요리는 산꼭대기에서 할 것. 명심해.”

...(중략)...

잭의 얼굴이 랄프 가까이 다가왔다.

“너나 닥쳐! 도대체 네가 뭐야? 거기에 앉아서 이래라저래라 지시나 하고. 사양도 못 하고 노래도 못 하는 주제에.”

“난 대장이야. 선출된 대장이라구.”

“선출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아무 의미도 없는 명령이나 하는 주제에.”

“규칙을! 너는 규칙을 어기고 있어.”

랄프가 외쳤다.

“알 게 뭐야?”

랄프는 기지를 동원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진 것이라곤 규칙뿐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잭은 그를 거역하고 외쳤다.

“얼어 죽을 규칙 같으니라구!”

그는 거칠게 외치며 어슴푸레한 모래 위로 뛰어내렸다.

(라)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디지털 빗장 걸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기본권 침해 문제에 더해 과거 실효성 논란 끝에 사라진 ‘첫다운

제’(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 차단)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 규제의 칼을 가장 먼저 빼 든 나라는 호주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해 12월부터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10개 플랫폼은 16살 미만 아동의 계정 접속을 제한하고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약 500억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도 아시아 최초로 지난달 말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신규 생성을 막았다. 프랑스에선 지난 1월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 또한 유사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기류는 SNS 과의존으로 촉발되는 각종 피해를 국가가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호주 총리실은 SNS 규제를 두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호주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 규제를 넘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도하는 구조임에도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면 90억원 상당 금액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와 같이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 추진 가능성을 밝히자 논란이 촉발됐다. 많은 청소년이 SNS 중독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강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법적 규제의 실효성이 약한 데다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 논쟁은 규제 정책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마)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단어 어디에도 한국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단어가 없다는 건 거칠게 말해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와 관련한 문화가 없다는 뜻이다. 외국어에 기댄 이 신종 단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아이들이 없는 지역’,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면 ‘어린이 제한구역’이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생경한 단어가 등장한 배경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옮기던 직원과 아동이 부딪혀 이 아동이 화상을 입었다. 2012년에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찌개를 나르던 직원이 유아차 안에 누워 있던 아동의 다리에 국물을 쏟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법정까지 갔는데, 법원의 판단은 동일했다. 식당의 책임을 70%, 부모의 책임을 30%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이 과하다는 비판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노키즈존이 전국적으로

하나둘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키즈존 운영매장은 2018년 10월 376곳에서 2022년 500곳 이상으로 늘었다. 4년 만에 100곳 넘게 증가한 것이다. 그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특정 공간에서 특정 집단의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차별행위"라고 결정했지만, 노키즈존 확산을 막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노키즈존을 자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유 행사로 본다. 업소 주인은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과 타겟 고객층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다른 손님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될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키즈존을 명백한 차별이자 혐오의 표출로 규정하며 법적 금지를 촉구하는 입장도 있다. 특정 집단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동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러한 배제의 논리가 확산될 경우 '노시니어존'이나 '노장애인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한편으론 노키즈존이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지만, 이를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신 아이를 환영하는 '에스키즈존'을 늘리거나,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